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4. 26(금)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담당과장	김장희 과장(044-203-5290)	담 당 자	허유석 사무관(044-203-5652)

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한국은 2009년 이후 11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 美 USTR은 '19.4.25(목)일 (美 현지시각)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5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우선감시대상국, 11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신규)

** **(감시대상국, 25개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UAE,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신규)

□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 연속** 이어진 것임

○ 우리 정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통합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27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허유석 사무관(☎044-203-5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美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4월말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구 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 Watch List
지정기준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
후속절차	지정 후 30일 이내 조사 개시 ↓ 조사개시일자에 상대국에 협의요청 ↓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보복조치 발동 여부 결정	별도 절차 없음	별도 절차 없음
보복조치	*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	×	×

□ 우리 나라는 2008년까진 3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감시 대상국' 이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이에서도 제외

연 도	분류			비 고
	우선협상대상국 (PFC)	우선감시대상국 (PWL)	감시대상국 (WL)	
2000		○		SW, 서적 불법복제 지적
2001		○		
2002			○	
2003			○	
2004		○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불법 DVD 노점상, 음반의 디지털 불법복제 지적
2005~2008			○	
2009~2019				**대상에서 제외**